

제1차산업경제위원회
2019.1.18(금)12:00

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산 업 경 제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오문석

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발의자 : 박우양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19년 1월 9일

나. 회부일자 : 2019년 1월 11일

3. 제안 이유

-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제정되어 운용중인 조례의 명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, 충청북도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지원대상 및 사업 조문을 새롭게 신설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가. 조례명 개정 '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' ➔ '충청북도 노사관계발전 지원 조례'로 변경
- 나. 장 제목 신설(제1장 총칙, 제2장 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, 제3장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사업)
- 다. 도내 노사민정간 상호 책무 신설(안 제2조)
- 라.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지원대상 신설(안 제15조)
- 마.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지원대상 사업신설(안 제16조)

5. 검토의견

- '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'은 노사관계 발전을 위

해 제정되어 운용중인 조례의 명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, 충청북도
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지원대상 및 사업 조문을 새롭게 신설하고
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은 타당함.